# 안전확인 시험 · 검사 진행절차_완구

KATRI

| 절차 | 세부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**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** | 1. 안전확인 신고용<br>① 안전확인 시험·검사신청서(용도 : 안전확인신고용 or 재시험용)<br>② 제품설명서(컬러사진 포함)<br>③ 확인서 작성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<br>- 제조업자 확인서<br>- 액체완구 포함<br>· 방부제 확인서<br>· MSDS 자료 확인서 : 물질명과 CAS 번호 작성<br>- 재시험 확인서<br>· 재시험 진행시 첨부<br>- 전지 포함완구(단추형 전지 포함)<br>· KC 인증확인 서류<br>- 2차전지 포함완구<br>· 2차전지 확인서, 표시시항<br>· 2차전지 성적서 및 사양서<br>(보호회로 도면/회로도 및 보호소자부품 포함)<br>④ 사업자등록증 사본<br>⑤ 안전확인 신고서<br><br>2. 추가시험용<br>① 안전확인 시험·검사신청서(용도 : 추가시험용)<br>② 제품설명서<br>③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(*신고확인증 번호 있음)<br>④ 확인서 작성 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<br><br>3. 안전확인 재신고용<br>**(*기존 안전확인신고를 진행했던 안전인증기관에서만 재신고 가능)**<br>① 안전확인 시험·검사신청서(용도 : 안전확인 재신고용 or 재시험용)<br>② 제품설명서(컬러사진 포함)<br>③ 확인서 작성(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)<br>- 제조업자 확인서<br>- 재시험 확인서<br>· 재시험 진행시 첨부<br>④ 사업자등록증 사본<br>⑤ **안전확인 신고서(*기존 신고확인증 번호 있음)** | - 붙임양식 참고<br><br>- 작성문의 : 인증사업팀<br>**· 031-596-5787**<br><br>**※안전확인신고서상 변경사유(신고인 정보 및 확인신고 내용)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미진행한 경우, 재신고(기존 신고 번호 사용) 불가할 수 있음** |
| **신청접수 (방문 및 택배)** | **접수처**<br>**-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KATRI시험연구원 3층 인증사업팀**<br>· 031-596-5787 | - 접수증 이메일 발송 (수수료, 완료예정일)<br>- 수수료는 접수 후 납부 |
| **시험·검사·발급** | ① 제품 크기, 모양, 색상이 동일한 **완제품 기준**<br>- 2set 제출시 : 업무일 기준 5일<br>- 1set 제출시 : 업무일 기준 10일<br><br>② 2차전지 포함 완제품<br>- 5set 제출시 : 업무일 기준 45일 | - 시료 보완, 시험 항목 등에 따라 일정 조정<br>**- 유해원소용출 종분리 추가시험이 발생될 경우 완료예정일 지연** |
| **안전확인 신고접수** | <제품검사 합격 후 진행><br>- **신고수수료(50,000) + 부본료(5,000) : 55,000원 (VAT 별도)**<br>- 발급기간 : **업무일 기준 +1일** | - 신고문의 : 인증운영팀<br>· 031-596-5698 |
| **안전확인 신고서 발급** | 신고서 원본 우편발송(등기) | 인수방법 선택 |

**※시험 진행 과정에 시료의 분해 또는 파손되는 시험 항목이 포함되므로, 시험이 끝난 시료는 파손되거나 정상작동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
# 안전확인 시험 · 검사 신청서 (예시본)

**신청일 : 20 . . .**

| 접 수 번 호 | | KIKO - | | | 세금계산서 | 수취회사명 | ㈜0000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자 | 회사명 |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| 대표자 |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| | 사업자번호 | 123-45-67890 |
| | 주 소 |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| | | | 담당자 | 세금계산서 담당자 |
| | 담당자 | 신청 담당자 | F A X | 031)000-0000 | | E-mail | 0000@katri.re.kr |
| | T E L | 031)000-0000 | H. P | 010-0000-0000 | | 연락처 | 031)000-0000 |
| | E-mail | 0000@katri.re.kr | | | | | |

| 어린이제품명(기준) | 완구 (부속서 6) | 모 델 명 | 필수 기재사항 |
|---|---|---|---|
| 제조국명 | 필수 기재사항 | 제조업체명 | -국 내제조의 경우:신청자와 제조업체명이 같아야함 (*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제조업 필수)<br>- 수입제품일 경우:영문 또는 한글로 기재 |
| 작동성 구분 (필수 선택) | ☐ 작동완구 ■ 비 작동완구 | | |
| 사용 연령 구분 (필수 선택) | ※표시사용연령 ( 5세 이상 ) [표시사용연령 예 : 4세 이상]<br>☐ 영.유아용 완구(3세 미만) ■ 어린이용 완구(3세 이상 ~ 8세 미만) ☐ 어린학생용 완구(8세 이상) | | |
| 재질 구분 (필수 선택) | ■ 플라스틱 ☐ 섬유 ☐ 목재 ☐ 금속 ☐ 유리 ☐ 종이 ☐ 액체 ☐ 겔 ☐ 점토 ☐ 기타<br>(기타로 선택시 정확한 재질 기입 필요 ex. 모래, 가루 등 | | |
| 성적서 (부본수) | ■ 국문 ( 부) | | |
| 용 도 | ■ 안전확인 신고용 ☐ 추가시험용 ☐ 재시험용 ☐ 안전확인 재신고용 ☐ 품질관리용 | | |
| 성적서 인수방법 | ☐ 방문 ☐ 우편 ☐ 이메일 ■ 이메일 후 우편 | | |
| 시료 처리 | ■ 폐기 ☐ 반환 (시험·검사 후 파괴된 제품)<br>※ 본 제품에 대하여 **시료처리에 "반환" 선택 시** 시료의 인수통보 후 1개월 내 제품 인수가 없을 경우 폐기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| | |

| 시험·검사항목 | 시료수 | 비고 | 시험·검사항목 | 시료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

*(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·검사 접수 시에는 별도로 시험·검사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)*

○ 신청시 필요서류

① 시험 · 검사신청서 1부 ② 제품설명서(컬러사진 포함)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④ 검사용 시료 2개 세트(2차전지 사용시 5개 세트) ⑤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(추가시험용인 경우)

○ 시험 진행 중 추가로 관련 서류, 시료, 수수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

○ 접수증은 이메일로 송부해드립니다. 수수료는 의뢰신청 접수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수수료 미 입금 시 결과 안내 및 성적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.
또한, 안전확인 신고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

○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.

○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에는 유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,
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에는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 표시를 해야 함을 확인합니다.

○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모델이 아님을 확인합니다.

○ 본 신청서는 「**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**」에 따른 **완구**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· 검사신청서입니다.
따라서 **기입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**

신청인 홍 길 동 (서명 또는 인) (필수)

Katri 시험연구원

문의처 : 인증사업본부 인증사업팀
접수 : 031)596-5695
상담 : 031)596-5787

* 접수처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KATRI시험연구원 3층 인증사업팀

# 제 품 설 명 서 [완구]

완 구

| 제 품 사 진 <컬러 사진 및 완제품으로 첨부할 것(부속품, 포장(케이스, 포장지) 포함> | |
|---|---|
| 제품의 용도<br>(놀이 및 사용방법) | 해당 제품의 사용방법을 간단히 기입 |

## 제품 제출시 유의 사항

**1. 접수 시 사용연령 확인 필수**

① 포장상태의 완제품 제출(박스, 비닐 포함)

② 제품포장상태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연령이 표시된 박스사진이나 도안으로 제출

**2. 블록 등의 조립 완구**

① 블록 등의 완구는 조립설명서 포함하여 제출

② ①번 항목 불가 시 블록으로 조립한 완성품 사진 제출

③ 완제품사진이 없는 창작활동 블록의 경우 제품설명서 하단의 안전표시란에 " 본제품은 어린이 창작활동을 위한 구성품임"을 표기

| 표 시(단위포장에 표시할 내용) <아래사항 모두 필수기재, 도안이 있을 경우 도안으로 제출> | |
|---|---|
| 품명 | 완구 |
| 모델명 | 신청서와 동일 |
| 제조연월 | 2024. 01. 01 |
| 제조자명 | 신청서와 동일 |
|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 | 신청서와 동일 |
| 주소 및 전화번호 | 제품하자 및 리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문의처, 소비자 상담실 등 |
| 안전 표시(주의·경고 등)<br>(*별첨1 참조) | "경고!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.<br>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" |
| 사용연령 | 신청서와 동일(표시사용연령) |
| 크기 및 한계 체중 | - 코스튬(의류)완구 : 크기(치수) 표기 예)S,M,L 또는 둘레 길이 등<br>- 승용완구, 의자 등 어린이가 탑승하는 제품 예) 최대하중 "___kg" 로 표기 |
| 제조국 | 신청서와 동일 |

| 확 인 사 항 <해당시 기재> | | |
|---|---|---|
| 자석 | □ 사용 | ■ 미사용 |
| 배터리 | □ 1차전지<br>□ 2차전지 | □ 제공함(판매 시 내장된 전지 제공되는 경우)<br>□ 제공안함 |
| 셀룰로이드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<br>(*별첨2 참조) | □ 사용<br>( 미기재시 해당재료 미사용으로 진행) | ■ 미사용 |

※ 제품 낱개에는 '제조(수입)자명 또는 그 약호' 및 '안전표시', '지시사항'을 표시하여야 하고, 사용설명서에는 한글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.

*** 별첨1 <안전 표시(주의·경고 등) : 제품에 표시사항 인쇄시 필요한 안전 표시, 사용 설명서 선택>**

| 안전 표시 및 사용설명서 | |
|---|---|
| **표시의 정의와 위치** | 안전 표시는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.<br>안전 정보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되어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.<br>**주.** 안전 표시는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. |
| **연령 구분 및 표시** |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구는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(예 ; 적색글씨, 음양각표시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)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.<br>의상 완구 또는 승용 완구와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완구에는 완구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결정하는 지침은 부록 **A**에 기술되어 있다.<br>**주.** 연령 구분 및 표시는 한글, 숫자 또는 연령 경고 표시기호 (**그림 1-1**)로 표시되어야 한다. |
| **정보와 설명서** | 완구의 안전한 사용 또는 조립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지시사항은 그것이 포장에 인쇄되든지 아니면 낱장의 형태로 인쇄되든지 관계없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.<br>**주.** 사용 설명서(3.)는 한글로 인쇄되어야 한다. |
| **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** |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<br>**" 경고!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.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"**<br>**" 경고!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.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"** 의 문구는 **그림 1-1**과 같은 연령 경고 표시기호로 대체해도 무방하다.<br>특정한 위해 요인의 표시는 제품,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.<br>그래픽을 고안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:<br>· 원과 가운데 획은 붉은 색으로 한다.<br>· 배경은 흰색으로 한다.<br>· 연령의 범위와 얼굴의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한다.<br>· 연령 경고 표시기호의 직경은 최소 10 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 구성요소들은 **그림 1-1**의 구성요소와 비례적으로 맞아야 한다.<br>· 적합하지 않은 범위의 연령을 숫자로 표시한다. 예를 들면 0-3과 같이 표시한다.<br><br>**그림 1-1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** |
| **풍선** | 다음의 경고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<br>**"경고!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. 성인의 통제를 요함.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.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."**<br>알루미늄 호일 풍선, 마일러 풍선(Mylar Balloon)등 금속 재질 및 전기 전도성 재질의 풍선은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.<br>**"경고! 천둥 번개시 또는 고압선(전압선) 근처에서는 사용 금지."**<br>**"지하철역, 전철역 및 고전압 설비 근처에서 사용금지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"** |
| **작은 공** 또는 구슬 | **a)** 작은 공 또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<br>**"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으로 되어 있음.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."**<br>또는<br>**"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음.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."**<br>**b)** 구슬 또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.<br>**"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로 되어 있음.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."**<br>또는<br>**"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.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."** |

| | |
|---|---|
| **물놀이 완구** |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<br>"**경고! 어린이의 키가 닿는 물에서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**"<br>제품에는 이 경고 문구를 완구의 몸체와 대조되는 색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 이때, 글자의 최소 높이는 3 mm 가 되어야 하며 팽창되는 완구의 표시는 공기 팽창 주입구의 한 개로부터 100 mm 이내의 위치에 해야 한다.<br>또한, 어떠한 광고 복사나 도해도 어린이가 감시 없이 내버려두어도 안전한 완구라는 기술을 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, 구명기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. |
| **유아 침대용 완구 또는 모빌** |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<br><br>유아 침대, 아기놀이판, 벽 또는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모빌은 적절한 조립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.<br>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<br>· 유아 침대용 모빌을 어린이가 움켜잡아서는 안 된다.<br>·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모빌을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손이나 무릎을 폈을 때 모빌에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.<br>· 벽이나 천장에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일어서서 팔을 뻗친 거리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.<br>·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(끈, 가죽 끈, 클램프 등)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.<br>·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더 사용해서는 안 된다. |
| **크립짐(crib gyms)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** | 끈, 코드, 고무 끈,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요람, 간이침대, 아기놀이판(playpen) 또는 유모차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 또는 크립짐(crib gyms)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.<br>**"경고!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"**(**3.2, 3.3** 참조)<br>또한, 완구의 구조, 강도, 설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완구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.<br>**"경고!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"**<br>아울러 이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된 특별이유(예 : 불충분한 강도)에 대한 주요설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<br><br>끈, 코드, 고무 끈,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유아 침대, 아기놀이판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(크립짐(crib gyms) 그리고 활동 완구 등과 같은 완구)는 적절한" 조립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이나 목 졸림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.<br>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<br>· 이 완구는 어린이가 입에 넣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위치 시켜야 한다.<br>· 매트리스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유아 침대의 경우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완구가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.<br>· 완구가 장착된 상태에서 유아 침대의 난간을 내려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.<br>·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(끈, 가죽 끈, 클램프 등)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.<br>·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<br>또한, 미끄럼틀, 매달린 그네 및 고리, 곡예용 그네 로우프, 대들보에 부착된 유사 완구 및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된 기타 완구는 정기적으로 주요 부품들(대들보, 고정쇠, 붙박이 등)의 유지와 점검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완구는 뒤집히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는 위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.<br>설명서에는 또한 조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조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br>적절한 바닥 표면에 대한 특정한 안내도 나타나야 한다. |

| | |
|---|---|
| **음식과 접촉하는 완구** | 완구 또는 완구의 구성요소가 음식과 접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, 제품의 사용 전후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한다. |
| **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** |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완구의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.<br>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구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. |
| **모조 보호 장구** | 보호장구(예 : 산업용.운동용.소방용 안전모, 눈 보호구 등)를 모방한(simulated) 완구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<br>**"경고! 사고발생 시 보호받지 못함" 또는 "경고!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,"**<br>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는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<br>**"경고!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로 사용할 수 없음, 야외에서 사용시 햇빛에 의한 안구 화상의 위험이 있음." 또는 "경고!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, 선글라스용도로 사용시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."** |
| **기능성의 가장자리와 끝을 포함하는 완구** | 기능 완구의 필수 요소인 쉽게 닿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을 포함하는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는 포장에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이 있음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. |
| **기능 완구** |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**"경고! 어른의 직접적인 감시하에서 사용되어야만 함"**<br>또한, 사용설명서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예방 조치 사항과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. |
| **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** |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몸무게가 2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.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"**경고! 안전모 및 손목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.**"<br>또한, 사용 설명서에는 이것을 타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사용자 및 제 3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추락 및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 일부 표시사항이 추천되는 보호장구(안전모, 손목 보호대, 무릎보호대, 팔꿈치 보호대 등)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. |
| **발사체 완구** | 발사체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"**경고! 눈이나 얼굴 쪽으로 겨누지 말 것.**"<br>또한,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발사체 이외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의 위험에 대해 주의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. |
| **완구 연** | 완구 연 또는 끈으로 연결되어 비행하는 완구 제품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"**경고! 천둥 번개시 또는 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을 금함**" |
| **완구 자전거** | 제품 및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"**경고!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탈 것.**"<br>또한, 사용설명서에는 "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."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완구 자전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브레이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함을 기술해야 한다. |
| **격발 장치** |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"**경고!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.**<br>**눈이나 귀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.**<br>**주머니에 격발뇌관이 흔들리게끔 갖고 다니지 말 것.**" |

| | |
|---|---|
| **순간적으로 높은 소리를 내는 완구** |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br>"**경고!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말 것. 잘못 사용시에는 청력이 손상될 수 있음.**" |
| **단섬유를 포함하는 완구** | 직물바닥에 심어진 50 mm 이상의 곧은 길이의 단섬유를 가진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.<br>**"주의! 긴 털로 인하여 10 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**" |
| **승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끄는 완구** | 가장 높은 부위가 150 mm 이상의 것은 타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할 것. |
| **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** |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.<br>**a)** 언덕길에서 사용금지<br>**b)** 유아 등을 좌석에 태우고 미는 손잡이를 누르지 말 것.<br>**c)** 계단, 마루 등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옥외에서 사용에 대한 주의<br>**d)** 화기가 있는 곳, 고온의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.<br>**e)** 비를 맞지 않게 할 것. |
| **전등선을 사용한 것** | 정격 소비전력 및 정격 전압을 사용할 것. |
| **건전지를 사용한 것** | 제품에 극성을  표시할 것. |
| **열을 내는 제품** | 열발생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. |
| **접착제 및 용제** |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안전 관련 사항과 피부접촉 및 입으로 삼켰을 때의 응급조치 사항 등을 표시할 것 |
| **비누방울액 등 액체 완구** | **"주의! 입에 넣거나 빨지 말 것"** |
| **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** | **"경고.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.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**" |
| **전동 승용 완구** | 전동 승용 완구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는 완구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. 설명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<br>**a)** 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대 중량 혹은 연령 제한, 혹은 이 두 가지 모두<br>**b)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 문구**<br>ⅰ)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, 보호자의 감시 하에 사용되어야 함. 자동차가 있는 길거리나, 가파른 경사나 계단 근처, 수영장 혹은 기타 물 근처에서 사용을 금함.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고, ___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.<br>ⅱ) **화재의 위험이 있음**. 정해진 위치에 장착할 것. 오직 ____과 교체하시오.<br>(주: 이 경고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모든 퓨즈나 회로 보호 장치가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. 제조자는 부품 번호 또는 동등품을 기술해야 한다.)<br>**c)** 제조자가 제시한 전지만을 사용 |
| **완구 상자** | 사용설명서에 적절한 조립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조립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. 덮개의 지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지지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. |
| **액체를 채운 치아 발육기** | 냉동장치 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.<br>**"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에 놓아두면 안됨"** |

| | |
|---|---|
| **완구 스쿠터** | - 최대 사용 체중이 2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.<br>**"최대 20 kg"**<br>**"경고!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."**<br>**"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"**<br>- 최대 사용 체중이 5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.<br>**"최대 50 kg"**<br>**"경고!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"**<br>**"체중이 5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"**<br>- 사용자 및 제 3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낙상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에는 완구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 또한 다음의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.<br>. 위에서 지시한 경고 문구<br>. 접을 수 있는 스쿠터의 경우 안전하게 접거나 펴는 방법<br>. 모든 잠금 장치를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를 줄 수 있는 문구<br>. 공용 도로 및 보도에서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<br>. 헬멧, 장갑, 무릎 보호대, 팔꿈치 보호대와 같은 보호 장구의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 |
| **자성/전기 실험 세트** |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한다.<br>**"경고!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. 이 제품은 작은 자석(들)을 포함하고 있음.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.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."**<br>다만, 이 경고 문구는 모든 자석이 자속 지수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$kG^2mm^2$ (0.5 $T^2mm^2$) 미만이거나,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자석부품 또는 제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. |
| **전기 실험세트** | 실험세트는 외부 포장에는 **제1부 5. 표시**에서 요구한 표시 외에도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.<br>**"경고! 8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것."** |
| **전동 완구** | 전동 완구는 적용 가능한 경우 안전한 전지 사용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. 이러한 지시서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.<br>· 전지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방법<br>· 재충전할 수 없는 전지는 재충전하면 안 된다.<br>· 재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충전할 때는 어른이 감독해야 한다.<br>· 재충전용 충전기의 충전상태 표시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과충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.<br>· 오래된 것과 새 것 또는 다른 형태의 전지들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.<br>· 완구로부터 다 쓴 전지를 제거해야 한다.<br>· 전원 공급 단자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. |
| **가연성** |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/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중<br>화염 전파 속도가 10 mm/s 에서 30 mm/s 사이일 경우,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<br>**"경고!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."** |

완구

## * 별첨2 가연성 일반 요구사항

# 완 구

| |
|---|
| 다음과 같은 재료는 완구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 |
| - 바니시, 페인트, 접착제, 탁구 및 이와 유사한 게임에 사용되는 공을 사용할 때를 제외한 셀룰로이드(셀룰로스 니트레이트)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. 완구가 **4.2** 에서 **4.5**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, **4.2** 에서 **4.5**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불꽃에 가한 특정 재료도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.<br>- 화염 접촉시에 표면 연소만을 일으키는 파일 표면으로 된 재료. 시험 불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일 표면 부분에 불꽃이 번지는 작은 부분도 보이지 않으면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.<br>- 인화성이 높은 고체 |
| 추가로 완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화성 기체, 인화성이 높은 액체, 인화성 액체, 인화성 겔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. |
| - 각각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5 mL이며 각각 봉인된 용기에 담긴 인화성 액체, 인화성 겔 및 조제물<br>- 필기 도구의 모세관 형태의 구멍이 있는 재료 안에 채워져 있는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인화성 액체<br>- No. 6의 컵을 사용한 KS M ISO 2431에 의한 흐름 시간이 38초를 초과하여 동적 점도가 $260\times10^{-6}$ $m^2/s$ 을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 |

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

# 안전확인 신고서 (예시본)

## (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)

(앞 쪽)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7일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고인 | 업체명<br>사업자등록증과 동일 | 사업자등록번호<br>사업자등록증과 동일 |
| | 대표자 성명<br>사업자등록증과 동일 | 전화번호<br>031-000-0000 |
| | 주소<br>사업자등록증과 동일 | |
| 확인 신고 내용 | 어린이제품명<br>완구(부속서6) | 품목분류번호(HS) |
| |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<br>비작동완구, 3세 이상 ~ 8세 미만, 플라스틱제 | 제조업체명<br>신청서와 동일 |
| | 제조국명<br>신청서와 동일 | 제조자 제시 모델명<br>신청서와 동일 |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대표자명 (서명 또는 인) 인

KATRI시험연구원장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<br>2. 제품의 설명서(사진을 포함합니다) 1부<br>3.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| 수수료<br>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|

| 신고확인증 번호 | |
|---|---|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(유효기간 : 년 월 일)

KATRI시험연구원장 직인

처리 절차

| 신고서 작성 | → | 접 수 | → | 검토 | → | 확인 | → | 신고확인증 작성 | → | 신고확인증 발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고인 | | 처리기관 (안전인증기관) | | 처리기관 (안전인증기관) | | 처리기관 (안전인증기관) | | 처리기관 (안전인증기관) | | 신고인 |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